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20. 12. 31.>

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
	주소		
지정된 긴급 자동차	종류	차명	형식
	등록번호	원동기 번호	
	용도		

재교부 신청이유	[ ] 잃어버림 [ ] 헐어 못쓰게 됨		
지정증 교부 연월일	. . .	지정번호	
관할 경찰서장 확인	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		

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・도경찰청장 귀하

첨부서류		
신청인 제출서류	1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(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2. 지정증(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명 2. 자동차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